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의 사전통지 의무화 등〉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5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감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화	3
2. 감사권한 남용 금지 및 민감정보 수집, 중복감사의 제한	8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찰 제한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7. 31.
3. 회 부 일 : 2024.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사원의 감사도 국가 권력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

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임(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24조제4항, 제27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감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화

-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관계자 등에 대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및 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① 감사원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감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현행	개정안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생략) <신설>	<u>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 사전통지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u>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u>감사를</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답변</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u>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 ----- -----. ⑤ 제3항----제4항----- ----- -----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개정안은 감사대상자 등에게 감사사유,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게 함으로써 대상자 등이 감사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적법절차의 측면에서 감사대상자 등이 사전통지 등을 통하여 쟁점을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감사와 관련된 사항 중 대상자의 방어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필수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사전통지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제15조 및 제16조¹⁾에서는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자 등에게 감사실시통지서 및 출석답변요구서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미통지 시 국회 보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고시와 관련하여 미통지사유 공개로 인한 감사의 기밀성·효율성을 저해할 우려와 감사원의 사전통지 이행 확보라는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비교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왜 감사하는지, 어떤 현장으로 갈 것인지 등은 사전에 알리지 않는 것이 감사의 실효성 등 측면에서 당연하므로 감사실시의 사전통지를 법률에 규정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자 등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유는 다양한데 개정안이 비위혐의자 등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상세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감사의 실효성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자의 방어권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2. 감사권한 남용 금지 및 민감정보 수집, 중복감사의 제한

- 개정안은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그 밖의 직원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및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없는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내의 중복감사를 제한하며, 비위와 관련없는 민감정보 수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및 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3(감사권한의 남용금지 등)</u> ① <u>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u>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u>우 국회에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u> 1.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u>국회의 감사요구</u>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u>국민의 감사청구</u> 3. <u>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증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u> 4. <u>직전의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u> 제5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우선, 감사권한의 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직무감찰을 통하여 피감기관 공무원·직원들의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징계·견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 제11조제2항2)에 따른 행정권한남용 금지에 대한 일반규정과는 별도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2)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중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사 입법례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³⁾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4조⁴⁾가 있음.

□ 다음으로, 비위와 관련 없는 민감정보 수집 금지 및 위반 시 형벌 부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⁵⁾라는 점에서 그 수집권한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민감정보 수집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둬으로써 감사원의 부당한 개인정보 취득을 방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⁶⁾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483).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⁷⁾,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⁸⁾에 근거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 없는 민감정보 수집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법정형(「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3호⁹⁾)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수준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마지막으로, 1년 이내의 중복감사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¹⁰⁾ 또는 「부패방지 및

7)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8)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9)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0)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 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국민의 감사청구¹¹⁾,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동일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금지함으로써 반복적 감사를 통한 행정력 낭비, 감사대상자 등의 권익 침해 및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서 중복조사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중복감사 제한규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²⁾¹³⁾
- 참고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복감사를 제한하고 있음(제33조¹⁴⁾).

11)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2)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31. 선고 2019구합65412 판결).

- 다만, 중복감사 시 국회 사전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의 기밀성·효율성을 저해할 우려와 감사원의 중복감사 억제라는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을 비교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① 감사권한 남용 금지의 경우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로서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고, ② 민감정보 수집의 경우 ‘감사대상의 비위’만 전제로 하고 있어 감사원이 ‘감사를 위하여’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이 법 제27조제5항¹⁵⁾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③ 중복감사 제한의 경우 1년 이내 감사를 실시한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비위혐의가 제기되어도 감사가 어려워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4)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하는 감사,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이 「감사원법」 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를 말함(제31제1항).

**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15)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찰 제한

- 개정안은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¹⁶⁾에 따라 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가기밀, 군기밀 등에 대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 제한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2. (생략) <u><신설></u>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u>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설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반한 국가작용으로, 진위(眞僞) 또는 시비(是非) 판단 영역이라기 보다는 가치관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16) 제24조(감찰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참고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3호¹⁷⁾에서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3호는 감찰의 한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해석론을 규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대법원이 명문의 규정 없이 해석을 통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인 ‘통치행위’의 존재를 긍정한 것과 유사하므로 감찰의 한계에 대한 해석론은 지금처럼 감사원 규칙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연구·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법률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5

17) 제5조(직무감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 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한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한다.
4. 준사법적 행위